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대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9
----------	------

발의연월일 : 2019. 9. 6.

발의의원 : 이대곤 의원, 구자학 의원

1.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요양원의 기능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다. 입소 대상·절차·비용 및 퇴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라. 수탁자의 선정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운영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이하“요양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고시한다.

제3조(기능) 요양원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의료복지 증진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과 지도
3.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4조(운영관리) ①군수가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를 둔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이용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시설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제6조(입소 대상·절차·비용 등) 요양원의 입소 대상·절차·비용 등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퇴소) ①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따라 입소한 경우
3.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퇴소 할 경우 입소비용을 면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 선정) ①군수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자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9조(운영비) 시설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 자부담경비와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입소자의 건강증진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요양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보조금, 시설이용 등의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수탁자가 동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권을 하부기관에 양도·대여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⑦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기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장비·비품 및 집기 등은 군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12조(기구 및 인력)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①수탁자는 수탁재산,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에게 의한 훼손 또는 멸실의 경우 또한 같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연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군·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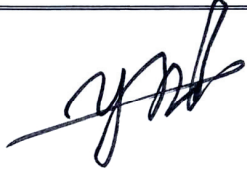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발 의 자 서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이 대 곤	이 대곤	
구 자 학	구 자학	